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166호 2008. 2. 20 (수)

【조 례】

○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지방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13
○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	22

【규 칙】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1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33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85호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중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제1조)
 - －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86호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군비”를 “정선군비”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군이외”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로 한다.

제4조본문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군비”를 “정선군비”로 개정(제1조)
- “군이외”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로 개정(제2조제1호)
-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제4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87호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담당주사가”를 “예산담당이”으로 한다.

제9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로 개정(제1조)
- “예산담당주사가” 를 “예산담당이” 으로 개정(제7조제2항)
-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로 개정(제9조)

.....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정선군조례 제2088호**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사회단체보조 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로 한다.

제15조중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14조” 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로 개정(제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89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 입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제2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0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으로 개정(제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1호**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2007.5.11 전면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2007.10. 4 전면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자구수정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로 함(제1조, 제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2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제2호로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래기획단

- 혁신분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 신활력 사업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각 실·과·소장 및 여유키구의 장”를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12.13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여유기구제 폐지 등에 따른 본청 직제 순위 조정(제3조, 제3조의 2)
 -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도록 함.
 - 여유기구제 폐지에 따라 미래기획단을 본청 기구에 포함시켜 자치행정과 다음에 두도록 함. (제3조의 2 삭제)

.....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3호**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2007.12.13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총정원 : 620명 (현행유지)
 - 집행기관 : 608명 (현행유지)
 - 의 회 : 12명 (현행유지)
- 직급별 정원의 조정
 - [별 표] 개정
 - 일반직 4·5급 : 증1명
 - 일반직 5급 : △1명

[별표]

정선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0	300	12	94	30	90	94
정무직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476	240	6	56	24	70	80
4 급	1	1	0	0	0	0	0
4~5급	3	2	0	1	0	0	0
5 급	24	10	2	2	1	4	5
6 급	131	78	3	8	5	17	20
7 급	149	78	1	20	9	18	23
8 급	118	50	0	20	7	21	20
9 급	50	21	0	5	2	10	12
연구직	1	1	0	0	0	0	0
연구사	1	1	0	0	0	0	0
지도직	22	3	0	19	0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19	3	0	16	0	0	0
별정직	12	0	0	12	0	0	0
6급상당	11	0	0	11	0	0	0
7급상당	1	0	0	1	0	0	0
기능직	108	55	6	7	6	20	14
6 급	3	3	0	0	0	0	0
7 급	11	9	0	1	1	0	0
8 급	25	12	2	2	1	7	1
9 급	38	16	2	3	1	8	8
10급	31	15	2	1	3	5	5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4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 것

제8조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 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 본문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사유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로 세부담 급증에 따른 납세자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등과
-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등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주요골자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제7조의2)
 - ↳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로 명확화 (재산세 25% 감면)

-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제10조의2)
 - ☞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구관사업등 감면규정 신설
 - ※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기간 연장 (제18조)
 - ☞ 감면기간 연장 : 2007.12.31 ⇒ 2009.12.31
 - ※ 전방조종자동차 : ~ 2008.12.31 (100분의 66)
 - ~ 2009.12.31 (100분의 33)
 - 위 이외 자동차 : ~ 2008.12.31 (100분의 33)
 - ~ 2009.12.31 (100분의 16)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 (제20조)
 - ☞ 주상복합아파트(주거용)에 대한 감면 제외 (재산세 50%)
- 기타 근거법령 개정등 따른 조문정비등(제8조, 제10조, 제21조)

.....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정선군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과년도채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illegible]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구 분		건 수	징수액	포상금	계좌번호	비 고
합 계						
채납액 징 수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숨은세원 발 굴	미등기전매					
	등기1년경과					

상기 금액을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개정사유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조기 확충 및 세수 누락을 최소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급대상 (제2조)
 -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케 한 공무원(민간인)
 - ▷ 창의적 제안·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민간인)
- 지급기준 (제3조)
 - ▷ 과년도 체납액(1년차)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
 - ▷ 과년도 체납액(2년차)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
 - ▷ 과년도 체납액(3년차이상)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
 - ▷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발굴·부과한 경우 : 100분의 5
 - ▷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 : 100분의 5
 - ▷ 창의적 제안·제도개선 : 건당 10만원 ~ 30만원
- 지급한도 (제4조)
 - ▷ 미수금 징수 : 1건당 30만원
 - ▷ 개인별 월지급 한도 : 100만원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5조)
 - ▷ 위 원 장 : 부군수
 - ▷ 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 ▷ 위 원 : 재무과장(당연직) 포함 5급이상 2~4인

.....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조례 제2096호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제12조제1항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5호, 제7호”로 한다.

제17조 중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 7. 1.일자로 개정시행되었고,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또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

- 자활계정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5조제1항)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 (제12조제1항)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선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정선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20조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다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3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별 표 〉

정선군 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설치년월일
정선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7-10번지	1990. 4. 3
사북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0-10번지	2004. 3. 1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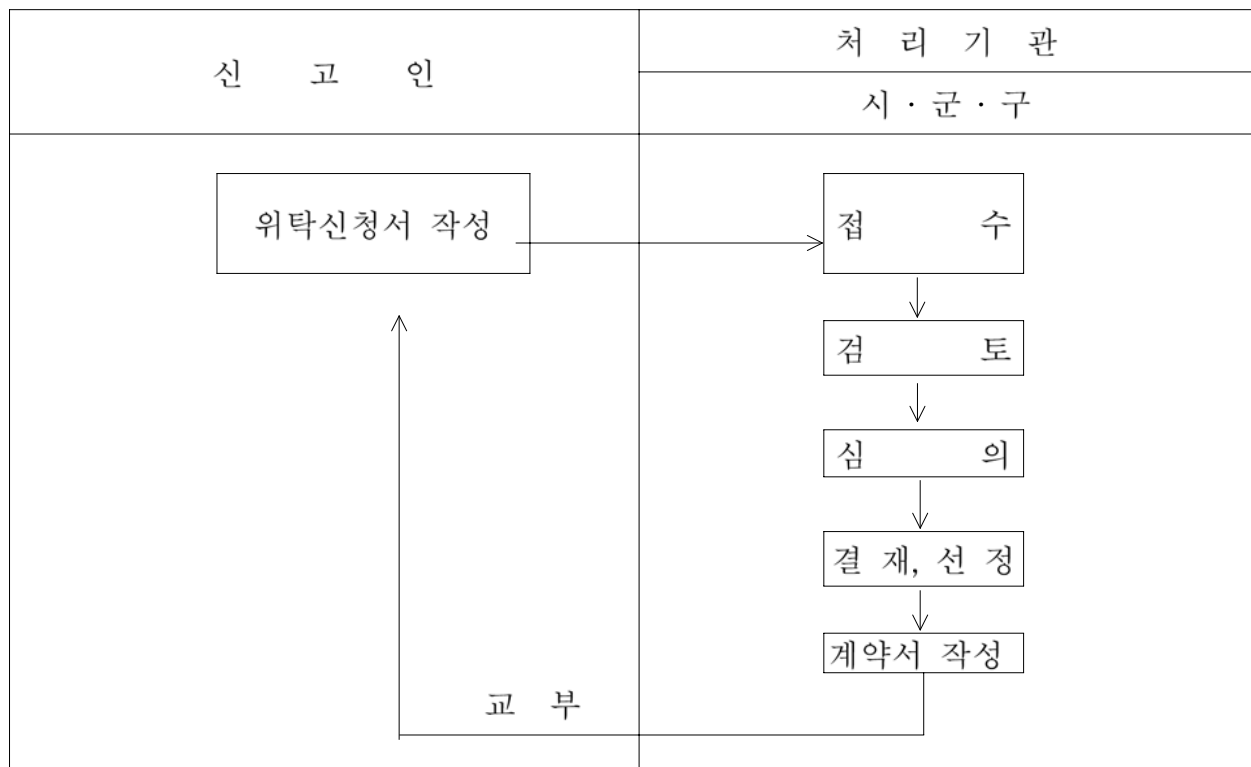
(앞 면)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④주민등록번호			
보 시 의 육 설 장	⑤성 명			
	⑥주 소	(전화:)		
	⑦주민등록번호			
시 설 개 요	⑧명 칭			
	⑨소 재 지	(전화:)		
「정선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 뒤 면 확 인				수수료 없 음

(뒷 면)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

시설명칭 :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보육시설의 장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위탁기간 :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제정이유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구체적 명시
(제6조, 안 제8조)
-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 명시
(제13조, 안 제14조)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규칙 제1118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미래기획단장·재무과장·관광문화과장·산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건설도시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미래기획단)미래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분권시책추진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3. 규제개혁
4. 행정혁신 업무
5. 혁신분권 교육
6. 균형발전 시책 추진
7.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8. 신활력사업 추진
9.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제10조제104호 및 제107호, 제11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53조 내지 제1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 병해충 방제대책 업무
154. 귀농인 상담, 교육, 창업,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155.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156.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 지도관리

제18조제22호 및 제25호, 제30호,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53호 내지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병해충 예찰업무
54.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55. 채종포 관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부군수, 실·과·소장 및 여유키구의 장”을 “부군수,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2007.12.13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조정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부서장의 직급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회복지 5급 → 지방행정4급 또는 지방행정·사회복지5급
- 사무의 조정
 - 농업정책과의 “외래·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대책 수립추진”업무를 삭제하고,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감자 채종포단지 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며, “병해충 방제대책 업무”, “귀농인 상담, 교육, 창업,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지도관리”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귀농인 상담, 교육, 창업,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지도관리”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며, “병해충 예찰업무”,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채종포 관리”를 추가로 분장함.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2 . 18 .

정선군규칙 제1119호**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0	300	12	94	30	90	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소 계		476	240	6	56	24	70	80
4 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		1			1			
5 급소계		24	10	2	2	1	4	5
행정		6	5	1				
농업		1	1					
의무		1			1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간호		1			1			
6 급 소계		131	78	3	8	5	17	20
행정		57	36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4	4					
녹지		3	3					
보건		1			1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7	1				1	5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7	7					
	전산·통신	1	1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농업·시설	4					4	
	농업·지도사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보건·간호·의기	3			3			
7 급	소계	149	78	1	20	9	18	23
	행정	52	30	1		1	6	14
	세무	6	6					
	사회복지	5	3				2	
	전산	1	1					
	공업	2	1			1		
	농업	5	5		0			
	녹지	2	2					
	보건	9			9			
	의료기술	4			4			
	간호	5			5			
	환경	3	1			2		
	시설	21	12			2	3	4
	통신	1	1					
	행정·세무	5	2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0	1		0		4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8	전산·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보건·간호	1			1			
8 급소계		118	50	0	20	7	21	20
9	행정	35	15			1	9	10
	세무	2	2					
	사회복지	3					2	1
	전산	3	3					
	공업	3	2			1		
	농업	6	3				2	1
	녹지	3	3					
	보건	1			1			
	의료기술	5			5			
	간호	1			1			
	환경	2	1			1		
	시설	14	7			1	4	2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0			2		
	행정·시설	9	4			1		4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7	1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보건·간호·의기	3			3			
9급 소계		50	21	0	5	2	10	12
10	행정	15	5				7	3
	세무	4						4
	사회복지	9	4				1	4
	사서	1	1					
	공업	3	1			2		
	농업	3	1				1	1
	녹지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환경	1	1					
	보건	5			5			
	시설	4	3				1	
	행정·시설	1	1			0		
	전산·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소 계		1	1	0	0	0	0	0
연구사 소계		1	1	0	0			
	학예연구·별정	1	1					
지도직 소 계		22	3	0	19			
지도관 소계		3	0	0	3			
	농촌지도관	3			3			
지도사 소계		19	3	0	16			
	농촌지도사	17	3		14			
	생활지도사	2			2			
별정직 소 계		12	0	0	12	0	0	0
6급상당 소계		11			11			
	보건진료원	11			1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소 계		108	55	6	7	6	20	14
6 급 소계		3	3	0	0	0	0	0
	운전·기계	3	3					
	통신·전기	0						
	필기·조무	0	0					
7 급 소계		11	9	0	1	1	0	0
	토목	1	1					
	통신	1	1					
	전기	0	0					
	기계	0	0					
	운전	2	1		1			
	필기	0	0					
	조무	2	2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2	1			1		
	필기조무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8 급	소계	25	12	2	2	1	7	1
	토목	2	1			1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5	1		1		3	
	영사	1	1					
	운전	10	3	1	1		4	1
	필기	1	1					
	전산	1	1					
	조무	3	2	1				
9 급	소계	38	16	2	3	1	8	8
	토목	3	3					
	교환	1	1					
	전기	1	?			1		
	기계	5					1	4
	운전	11	2	1	2		3	3
	필기	6	5	1				
	전산	1	1					
	조무	10	4		1	0	4	1
10급	소계	31	15	2	1	3	5	5
	전기	2	1			1		
	기계	2				2		
	화공	0			?			
	난방	1	1					
	운전	4	1		1		1	1
	위생	0	0					
	워드	2	1	1				
	필기	4	4					
	조무	15	6	1	0		4	4
	지도	1	1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2007.12.1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해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총정원 : 620명 (현행유지)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변동없음”
 - 본 청 : 300명(현행유지)
 - 의 회 : 12명(현행유지)
 - 사 업 소 : 30명(현행유지)
 - 직속기관 : 94명(현행유지)
 - 읍 면 : 184명(현행유지)
- 직급조정
 - 행정·사회복지5급 △1명 → 행정4급 또는 행정·사회복지 5급 중1명